

[별표 1]

**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** (제14조)

사업구분	적용범위	비고
1. 송전선로 건설사업	○ 철탑부지,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	
2. 건축물의 축조가 추가되는 사업	○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사업계획 면적	
3.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	○ 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,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수로,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	
4. 도로 확장사업	○ 확장되는 도로 범위(법면 및 사면 포함),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	
5. 공원 조성 사업	○ 시설물 설치, 탐방로(산책로), 조경 등 토지의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	
6. 식재 및 벌채	○ 임도, 작업로 등의 개설로 인해 절성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면적	
7. 기 타	○ 토취장, 사토장,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	